

의안번호	2215769
의 퇴 인	김태선의원
회 답 일	2026.3.3.
추 계 번 호	25B747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아용 기저귀를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의 재정수입 감소는 향후 5년간 총 588억 7,500만원(연평균 117억 7,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폐기물부담금(안 제12조)	-11,775	-11,775	-11,775	-11,775	-11,775	-58,875	-11,775

주: 본 추계서는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유아용 기저귀로 가정하고, 최근 5년간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의 평균치를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대통령령에 따른 부담금 제외 대상의 범위 및 유아용 기저귀의 출고·수입량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재정변동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폐기물부담금)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함(제2항) <u>3.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u>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폐기물부담금)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시행되어 해당 제품이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그에 따른 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여 국가의 수입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에서는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유아용 기저귀로 가정하고, 이를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발생하는 국가의 수입 감소분을 추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¹⁾에 따라 1회용 기저귀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1회용 기저귀 중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의 평균치를 준용하여 추계함
 - 한편,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는 제품 중

1)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부동산(「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3. 삭제 <2024. 6. 4.>
4.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5. 담배(「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 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7.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재정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제안 이유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을 1회용 기저귀 중 유아용 기저귀로 한정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최근 5년간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의 평균치를 준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국가 수입 감소 규모를 추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평균 부과액은 117억 7,500만원임
 -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최근 5년간 유아용 기저귀 폐기물부담금 부과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유아용 기저귀	12,963	11,625	11,121	11,848	11,317	11,77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아용 기저귀를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의 재정수입 감소는 향후 5년간 총 588억 7,500만원(연평균 117억 7,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폐기물부담금(안 제12조)	-11,775	-11,775	-11,775	-11,775	-11,775	-58,875	-11,775

주: 본 추계서는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유아용 기저귀로 가정하고, 최근 5년간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의 평균치를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대통령령에 따른 부담금 제외 대상의 범위 및 유아용 기저귀의 출고·수입량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재정변동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서는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유아용 기저귀로 가정하고, 최근 5년간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의 평균치를 준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향후 대통령령에 따른 부담금 제외 대상의 범위 및 유아용 기저귀의 출고·수입량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재정변동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부과액 현황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현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살충제 유독물	계	384	397	400	441	449	8	
	제조	335	281	277	292	315	23	
	수입	49	116	123	149	134	△15	
부동액	계	4,524	4,624	5,271	5,184	5,347	163	
	제조	4,307	4,397	4,968	4,867	5,082	215	
	수입	217	227	303	317	265	△52	
검	계	2,888	2,235	1,931	2,029	2,460	431	
	제조	2,789	2,132	1,814	1,893	2,373	480	
	수입	99	103	117	136	87	△49	
기저귀 ¹⁾	계	18,154	17,246	17,395	19,534	19,655	121	
	제조	10,417	10,207	9,984	10,509	9,362	△1,147	
	수입	7,737	7,039	7,411	9,025	10,293	1,268	
담배	계	82,719	90,874	89,132	93,780	99,133	5,353	
	제조	77,243	83,394	83,029	85,558	92,856	7,298	
	수입	5,476	7,480	6,103	8,222	6,277	△1,945	
플라 스 틱	계	82,134	87,188	92,826	101,384	91,726	9,658	
	제조	일반	32,281	33,841	34,669	36,159	31,827	△4,332
		건축	13,058	15,399	16,478	42,405	18,921	△23,484
	수입	일반	35,878	36,683	40,523	21,478	40,018	18,540
		건축	917	1,265	1,156	1,342	960	△382
아 이 스 팩	계	—	—	—	1,142	1,010	△132	
	제조	완제	—	—	—	904	791	△113
		반제	—	—	—	237	212	△25
	수입	완제	—	—	—	1	7	6
		반제	—	—	—	0	0	0

주: 1회용 기저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액은 유아용·성인용·애견용 기저귀에 대한 부과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